

일본 외국인노동자 정책: 새로운 전개와 향후 전망

이구치 야스시(井口 泰)

(간사이가쿠인대학 경제학과 교수)

■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새로운 전개

21세기를 맞이하여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첫째로 일본 국내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정착화 경향이 현저해졌다는 점, 둘째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역경제통합이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 셋째로는 일본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의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수용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89년 이후 '전문직·기술직 노동자는 가능한 한 받아들인다(현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로 되어 있음). 그러나 '소위 단순노동자' 수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라는 기본방침을 견지해 왔다. 일본 정부에 의하면 '소위 단순노동자'란 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의 사회·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모든 노동자를 의미한다.

1990년대 전반, 거품경제에 따른 노동수요 급증을 배경으로 '소위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를 필자는 '제1의 논쟁'이라 부른다. 그 후 경기불황과 출생률 저하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1998년 이후에는 '제2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미래의 인구감소에 대응해 이민자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다(井口, 2001: 40~44).

의외로 이런 논쟁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수용 기본방침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제1의 논쟁'이 고조되던 시기에 정부는 외국인연수제도 확충과 규제완화를 추진해 남미를 중심으로 일본계 노동자의 고용 대책을 마련했으나 기본방침을 변경할 생각

은 전혀 없었다. 일본의 인구가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될 것이 예측되고 출산율 저하의 대책 마련이나 연금개혁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제2의 논쟁'이 활발해 지더라도, 정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현행 경제계획 기간인 2010년까지는 기본정책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소위 단순노동' 분야에서 일하는 일본계 외국인노동자의 정착이 늘어났고 그 가족들의 생활도 급속히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현행 법제도와 외국인노동자의 실정과의 괴리는 더욱 현저해졌다.

또 2003년 12월부터 일본은 ASEAN 또는 한국,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또는 '경제연계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이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2002년 9월에 '출산율 저하 대책(Plus One)'을 발표했으며 2003년에는 '차세대 건전육성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합계특수출생률(연령별 출생률 불변을 가정한 상태에서 15~49세 여성 1인당 출산하는 신생아 수)은 2002년에 1.32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 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최근 동향

일본에는 2002년말 현재 76만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전체 고용자의 1.3%)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에도 계속 증가했다(표 1).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던 전문직·기술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며 17만9천명에 달한다. 단, 이 통계는 필리

핀 등에서 입국한 엔터테이너(유흥업 종사자)가 5만8천명 이나 포함된 수치이다. 또 대일직접투자가 급증했던 1999년경부터 일본에 부임해 온 외국기업 경영간부나 관리직이 급증해 체류기간에 관한 규제가 완화됐다. 또 일본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 '기술'이나 '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해 취직하는 중국 등 아시아국가 출신 유학생은 매년 약 3천명에 달하며 전문직·기술직 노동자의 증가에 기여했다.

브라질 등에서 온 일본계 외국인의 유입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한때 감소했으나 미숙련직종에서 일하는 일본계 외국인노동자는 23만명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브라질 등 남미지역 출신의 일본계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일본계 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업자 또는 파견업자에게 2~3개월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며 최근에는 임금수준도 하락하고 있다. 또 수년간 일한 뒤 귀국을 희망한 일본계 외국인의 대부분은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 가정에는 일에 바쁜 부모가 집을 비우는 사이에 학교에 가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으며 미취학률은 지역에 따라서는 40%에도 육박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브라질에 귀국할 것인지 일본에 정착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학이나 입시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치현의 도시를 중심으로 남미계통 청년들에 의한 범죄가 급증해 위기감이 급속히 고조됐다.

이미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아이치현 도

요타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외국인집중거주도시회의(外国人集住都市会議)’는 외국인의 취업이나 사회보장 문제와 더불어 2003년에는 남미계 청년의 교육과 취업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외국인집중거주도시회의(外国人集住都市会議)2001,2002).

또 불법체류자수(不法残留者数)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약 22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의 배경에는 매우 복잡한 움직임이 있다. 한편 강제퇴거처분 과정에서 법무장관이 발행한 ‘특별체류허가’에 의해 합법적 지위를 얻은 외국인은 최근 5~6천명이라는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예를 들어 일본인과 결혼하거나 자녀가 일본에서 태어나거나 일본에서 교육을 받는 등 일본 사회와의

관계가 밀접해진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불법입국 또는 불법체류하거나 조직범죄 등에 관여한 외국인의 검거건수도 연간 3만 5,700건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조직범죄의 증가와 외국인노동자수의 증가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견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 밖에도 최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으로의 유학의 증가가 있다. 이들 유학생의 대부분은 사비유학생이며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일을 한다. 장학금 제도의 확충이 유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유학생이나 일본어를 공부하는 취학생

[표 1]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추이(추계)

| | | 1990 | 1995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취업목적의 체류자격을 갖는 자 | | 67,983 | 87,996 | 118,996 | 125,726 | 154,748 | 168,783 | 179,639 |
| 기능실습생 ¹⁾ | | 3,260 | 6,558 | 12,144 | 19,634 | 29,749 | 37,831 | 46,455 |
| 유학·취학생의 자격 외 활동 ²⁾ | | 10,935 | 32,366 | 32,486 | 38,003 | 59,435 | 65,535 | 83,340 |
| 일본계 노동자 ³⁾ | | 71,803 | 193,748 | 234,126 | 220,844 | 233,187 | 239,744 | 233,897 |
| 불법 취업자 | 불법체류자 | 106,497 | 284,744 | 271,048 | 251,697 | 232,121 | 224,047 | 220,552 |
| | 자격 외 활동자 ⁴⁾ | - | - | - | - | - | - | - |
| 전 체 ⁵⁾ | | 260,000 +a | 600,000 +a | 660,000 +a | 670,000 +a | 710,000 +a | 740,000 +a | 760,000 +a |

- 주: 1) 워킹홀리데이로 입국한 사람이나 외교관 등의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포함.
 2) 유학생 또는 취학생으로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아 일하는 자.
 3) 일본계 노동자는 ‘일본인 배우자 등’ 또는 ‘정착자(定住者)’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며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고 취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임.
 4) 자격 외 활동으로 불법취업하는 자의 총 수는 추정이 어렵다.
 5) 위의 수치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제외함.

출처: 법무성입국관리국 자료에 입각한 후생노동성 추계

(일본어학원 학생)의 수는 2002년에 모두 8만3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체류자격 ‘특정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능실습생’이다. 기능실습제도는 외국인 연수생이 기능평가를 통해 기능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고용관계에 연결되어 체류자격을 ‘특정활동’으로 변경하여 총 2년(직종에 따라서는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는 제도다. 불황 속에서도 수산가공, 섬유 등 비교적 저임금 업종으로 기능실습생의 수용이 확대되어 최근 들어서는 어업이나 농업 등 후계자 부족에 부심하는 분야에서도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능실습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기술·기능의 이전이 결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실습생의 임금 중 일부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이나 사업협동조합이 적발되기도 하며 베트남이나 중국 출신의 기능실습생이 도주하는 등 제도개혁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 국내의 외국인 체류기간은 꾸준히 장기화되는 추세다. 일본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중국인이나 브라질인 등은 연간 2만명에 달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착을 포함한 법제도의 전환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 동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외국인노동자

최근 동아시아의 역내무역이나 투자를 촉진하고 통화위기 재연을 회피하며 이 지역의 경제발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

역협정(FTA)’을 체결해 지역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기운이 급속히 고조됐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의 기술개발력이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고급인력의 역내이동 원활화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2002년 11월, 일본과 싱가포르 사이에서 ‘FTA’이 발효되었고 그 후 일본은 태국, 한국, 필리핀 등과 경제동반자관계(EP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나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10년 후를 내다보고 일본과 ASEAN, 중국과 ASEAN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작업이 시작된다.

향후 구체화되는 동아시아의 FTA또는 EPA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따른 인력이동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인력이동의 자유화가 과제다. 또 하청·위탁 등 계약베이스의 인력이동이나 전문직종의 상호인증에 입각한 인력이동의 자유화도 협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서구국가의 인력공급원으로서 기능해 왔지만 지혜를 모아 아시아의 인재를 최종적으로 아시아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Findley2002, Iguchi2003).

또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통화위기 및 IT산업의 불황으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역내 국가간의 경제성장을 격차가 더 커졌다. 이 때문에 미숙련 또는 저숙련 노동자의 이동, 특히 불법 국제이동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최근 잉여노동력의 역내 송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2002년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가 약 500만명, 연간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는 약 86만명으로 증가했다. 인도네시아도 100만명을 훨씬 넘는 수의 노

동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인도 30만명에 달한다.

향후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숙련·반숙련노동자의 무질서한 이동을 억제하고 국제이동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출산을 저화와 외국인노동자 정책

1997년 1월에 공표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추계 결과, 2007년부터 일본의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장래 인구추계에서는 미래의 장래인구추계와 더불어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혼인율 저하를 단순히 ‘만혼화’로 이해하고 2010년 경까지는 총 특수출생률이

1.61까지 회복된다는 낙관적인 예측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예측을 발표한 후에도 ‘만혼화’는 멈추지 않았으며 또 ‘부부 한 쌍당 자녀수’도 감소 징후가 보이는 등 출생률 저하는 계속되고 있다.

새 추계와 구 추계를 비교해 보면 평생 결혼을 맺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인 생애미혼율(生涯未婚率)은 13.8%에서 16.8%로 상승해 최종적으로 부부 한 쌍당 자녀수는 1.96명에서 1.72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수정됐다. 총 특수출생률은 2000년 1.36에서 7년 후에 1.31까지 떨어진 후 다시 상승해 1.39 정도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서 1997년 9월의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의 (당시)추계에 의한 2050년까지의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사용해 신 인

[표 2] 신규 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와 감소폭 추정

(단위: 만명)

| | 1997년 구 인구 추계 | 경제활동 인구 | | 경제활동 인구 | | 2002년 신인구 추계 | 경제활동 인구 | |
|------|---------------------|------------|------------|------------|------------|--------------------|------------|------------|
| | | 추계A | 한 해 감소폭 | 추계B | 한 해 감소폭 | | 추계C | 한 해 감소폭 |
| 2000 | 126,892 | 6,616 | - | 6,616 | - | 126,926 | 6,616 | - |
| 2010 | 127,623 | 6,470 | 14.6 | 6,188 | 42.8 | 127,473 | 6,465 | 24.9 |
| 2020 | 124,133 | 5,992 | 47.8 | 5,668 | 48.0 | 124,107 | 6,078 | 38.7 |
| 2030 | 117,149 | 5,593 | 39.9 | 5,229 | 46.1 | 117,580 | 5,653 | 42.4 |
| 2040 | 108,964 | 5,070 | 52.3 | 4,680 | 45.1 | 109,338 | 5,106 | 54.8 |
| 2050 | 100,496 | 4,585 | 48.6 | 4,250 | 43.0 | 100,593 | 4,552 | 55.4 |

주: 경제활동인구 추계 A는 효율화 케이스, 경제활동인구 추계 B는 표준 케이스, 경제활동인구 추계 C는 경제활동인구 추계 A에 사용한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2002년 추계의 성·연령별 인구에 곱해서 필자가 추정. ‘효율화 케이스’에서는 2001~28년에 걸쳐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과 보육설비가 충분히 늘어날 것, 2020년 여성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의 80%이며 이후 보합세가 될 것을 가정했음. ‘표준 케이스’에서는 2001~2013년에 걸쳐 후생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것,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전직임금의 60% 수준의 부분연금을 지불할 것 2020년 여성 고등교육 진학률이 남성의 80%이며 이후 보합세가 될 것으로 가정했음.

자료출처: 경제활동인구 추계 A 및 B는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 『경제분석』, 제151호.

구추계 하에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았다(표 2).

이 추정치를 살펴보면 신추계에서는 총인구는 구추산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장년층의 인구 감소가 급속히 이뤄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의 감소폭은 후생연금지급개시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엄격한 개혁을 실시할 경우에도 연간 50만명 가까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총 특수출생률이 1.1로 상정되는 하위추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2030년 이후 더욱 폭이 넓은 연간 6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일본의 인구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순수이민 수용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겠다. [표 3]에서는 수용할 정착이민이 라틴아메리카계(고출생률)인지, 동아시아·동남아시아계(저출생률)인지로 분류하며 ①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유지할 경우 ② 고령자비율(65세 이상)을 유지할 경우 ③ 매년 일정 인원을 받아들여 2050년의 고

령자인구비율이 25%가 되게 하는 경우로 나누어 필요한 정착이민 순수유입 규모를 추정했다. (이구치, 1999).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정착이민을 받아들일 경우 순수이민 수용수는 가장 적어지거나 고출생률의 경우이더라도 연간 약 50만명에서 10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령인구비율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수의 이민을 받아들일 경우는 현재 미국의 연간 이민자 수용인원(80~100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순수이민 수용이 필요해진다.

이처럼 정착이민자 수용에 의해 장기적으로 인구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본래 인구감소나 인구구성의 문제를 이민자 수용만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현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고용수요에도 적합하지 않다(OECD, 1991). 미국의 이민 논쟁에서 지적되듯이 대량의 이민 수용은 결코 번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표 3] 일본인구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순수 이민자

(단위: 만명)

| 기간 | 생산연령인구 유지형 | | 고령자비율 유지형 | | 정수(定數) 수용형 | |
|-----------|------------|------|-----------|-------|------------|------|
| | 고출생률 | 저출생률 | 고출생률 | 저출생률 | 고출생률 | 저출생률 |
| 2000~2004 | 45 | 45 | 230 | 230 | 126 | 156 |
| 2005~2009 | 73 | 73 | 340 | 340 | 126 | 156 |
| 2010~2014 | 100 | 100 | 410 | 430 | 126 | 156 |
| 2015~2019 | 56 | 56 | 180 | 200 | 126 | 156 |
| 2020~2024 | 31 | 32 | 50 | 70 | 126 | 156 |
| 2025~2029 | 46 | 48 | 120 | 150 | 126 | 156 |
| 2030~2034 | 72 | 77 | 300 | 330 | 126 | 156 |
| 2035~2039 | 108 | 114 | 580 | 600 | 126 | 156 |
| 2040~2044 | 93 | 100 | 710 | 770 | 126 | 156 |
| 2045~2050 | 88 | 95 | 950 | 1,020 | 126 | 156 |

출처: 이구치(1999) [표 5](산와종합연구소의 통계)

(Borjas, 1994).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고용시스템의 개혁을 중심으로 소자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2025년 이후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속도를 늦춰가면서 2025년까지 어학, 지식·기술, 기능 등의 면에서 높은 수준을 갖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이 중요하다(井口·西村, 2002; 井口·西村·藤野·志甫, 2002).

또 서구국가들처럼 인재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유출해내는 정책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재 개발에 적극 공헌하고 이런 인재의 일부가 일본에 돌아와 정착할 것을 촉진할 것(‘인재 개발·환류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이구치, 2001a, 2001b).

■ 향후 정책전망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①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전환해 노동자의 정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용제도·체제를 정비할 것 ② 지역경제통합에 있어서 고급인력 및 미숙련노동자의 이동과 관련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 ③ 외국의 인재개발과 인재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기할 것 등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출입국 관리와 노동·사회보장과 관련된 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되어 함께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이구치, 2003b).

향후 정착화 촉진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노동자정책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일본 정부나 경제계·노동계·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의 진지한 논의가 기대된다.

■ 참고문헌

- Asian Development Bank(2003), *Asian Development Outlook*, Manila
- 외국인집중거주도시회의(外国人集住都市會議)(2001) 「하마마츠선언 및 제언」, 동(2002)「도쿄 선언」
- Borjas G. (1994),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XXXII December 1994, pp.1667~1717
- Findlay A.M. (2001), “From Brain Exchange to Brain Gain”, Report prepared for International Migration Branch, ILO Geneva
- 井口 泰(1999), 「장기적 노동력 인구 예측과 이민·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전망」, 간사이가쿠인대학 경제학연구회, 『경제학논구(經濟學論究)』, 제53권 제3호, pp.475~508.
- ___(2001a),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동향과 전망—지역통합, 소자녀·고령화와 일본의 선택—」,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해외사회보장연구』, No.134, pp.51~65.
- ___(2001b), 『외국인노동자 신시대』, 치쿠마 신서.
- ___(2002c), 「가속화되는 소자녀화와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연금과 경제』 2002년 가을호 Vol21, No.2, pp.54~59.
- ___(2003a), “The Movement of the Highly Skilled in Asia—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in: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Asia*, Paris
- ___(2003b), 「외국인고용법의 구상」(www.homepage3.nifty.com/iguchi-kwansei/)
- 井口 泰·西村 智(2002), 「국제비교 측면에서 본 고용시스템과 소자녀화 문제」, 『소자녀화 사회의 육아지원』, 도쿄대학출판회, pp.137~160.
- 井口 泰·西村 智·藤野敦子·志甫 啓(2002), 「고용측면에서 본 세대간 이해조정」, 히토즈바시대학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Vol53, No.3, July.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1997, 2002),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재)후생통계협회.
-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1997), 「고령화의 경제분석」, 『경제분석』, 제151호, pp.65~78.
- OECD(1991), *Migration— the Demographic Aspects—*, Paris.
- ___(2002a),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Asia*, Paris.
- ___(2002b),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tion*, Paris.